

신탁계약약관

2016.09.01.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영상저작물(영화 및 비디오물, 매체와 관계없이 이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저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저작권 보호와 원활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상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진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수탁자”라 한다) 사이에 저작권 신탁계약의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저작권의 신탁) ① 위탁자는 현재 가지고 있거나 앞으로 가지게 될 영상저작물에 대한 제4조에 규정된 권리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이를 관리하고 이로 인하여 얻어진 사용료 등의 수익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별도의 서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서 규정하는 권리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권리를 신탁하고자 하는 자는 신탁계약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가 앞으로 저작권을 취득하게 될 영상저작물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탁자는 신탁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위탁자에게 신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와 협의한 후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저작권의 신탁 기간) ① 신탁 계약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단, 위탁자의 저작권 보유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계약 기간에 대한 상호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계약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도 계약기간 중에 수탁자에 의해 진행된 이용허락 기간은 보장되어야 한다.

제4조(저작권의 관리범위)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위탁자로부터 저작권(이하 “신탁저작권”이라 한다.)을 수탁하여 관리한다.

1. 공연권
2.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그 밖의 공중송신)
3. 복제권
4. 배포권
5. 그 밖에 저작권법상 부여되는 권리

제5조(신탁저작권의 관할) ① 수탁자는 대한민국에서의 신탁저작권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의 의사에 따라 외국 지역에 대한 신탁저작권 관리 업무를 위탁자로부터 수탁받아 외국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등에 재 위탁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외국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의 저작물을 수탁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저작권의 확인 보증)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한 모든 저작권의 적법한 권리자임과 그 대상인 저

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음을 보증한다.

② 수탁자는 전항에서 위탁자가 확인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탁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저작물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수탁자는 그 업무를 행하는 지역에서 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하고 저작물 사용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및 분배 규정에 따라 징수하고 분배한다.

제8조(관리수수료의 징수) ① 수탁자는 신탁저작권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관리수수료를 저작물 사용료 분배 시 공제한다.

② 수탁자는 저작물 사용료 및 모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별도규정에 없는 기타수입을 업무수행 경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9조(신탁저작권관리에 따른 경비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경비는 해당 위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저작권에 대한 과세
2. 신탁저작권의 등록에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3. 신탁저작권의 귀속에 관련한 분쟁에 발생한 비용
4. 기타 위탁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가 이를 수행한 경우 소요된 비용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비는 신탁저작권의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0조(신탁저작권의 양도 및 질권 설정) 위탁자가 저작물 사용료의 분배 청구권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이용 허락 및 분배 유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신탁저작권의 이용허락 및 사용료의 징수 또는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1. 신탁저작권의 침해 또는 저작권의 귀속 등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소제기 또는 수탁자에 대해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2. 저작물 사용료에 대하여 분배 대상 또는 분배율 등이 불명확한 경우.
3. 위탁자가 신고한 저작물의 귀속 등에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2조(소권) ① 수탁자는 제2조 각항에 해당하는 신탁저작권 관리와 관련하여 침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침해자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한 제반사항을 제13조(제반 사항의 통지)에 따라 통지한다.

② 위탁자는 신탁 저작권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없으며, 수탁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하여 합의 또는 취하 등을 할 수 없다.

제13조(제반 사항의 통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에 대한 제반 사항의 통지를 위탁자가 신고한 주소지로 한다. 만약, 위탁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대리인의 주소지로 한다.

② 수탁자는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송금과 그 밖의 통지를 보류할 수 있다.

1. 제 14조 제①항 4호에서 규정하는 신고가 되지 않을 때.

2. 위탁자로부터 신고 된 주소로 보낸 최고, 그 밖의 통지가 계속해서 3회 이상 도달하지 않은 것이 확인 된 때.
3. 수탁자가 송금한 금액이 위탁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때.

제14조(위탁자의 신고의무) ①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고 소정의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위탁자가 새로운 저작물을 저작하였을 경우.
 2. 신탁저작권 행사에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소멸한 경우.
 3. 신탁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 인감을 분실한 경우.
 4. 위탁자의 법인명칭, 대표자, 대리인, 주소, 송금처 등이 변경된 경우.
 5. 기타 신탁저작권 관리에 지장이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위탁자가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신탁 계약의 승계) ①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위탁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위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을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 또는 해산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상속인 또는 해당 권리를 승계하는 법인은 위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하는 법인은 위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을 지체 없이 수탁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상속인 또는 승계하는 법인이 복수인 경우 상속인 중에서 1명을 대표자로 선임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신탁 계약의 해지)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신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의 신탁저작권이 소멸 또는 상실 되었을 경우.
 2. 위탁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위탁자가 파산 선고를 받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4. 위탁자가 본 약관에 따라 수탁자에게 통보 또는 협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위탁자가 타인의 저작권을 허위 신고하여 사용료를 수령하거나, 신탁된 저작권을 이중으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저작권 신탁 관리에 따른 제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위탁자의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비용은 귀책사유를 제공한 측에서 책임을 진다.
- ④ 신탁계약에 대한 해지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해지의 효력은 계약 상대방이 해지 통보를 받은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권리보호기간의 만료로 해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신탁 계약의 종료) 수탁자는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효력 발생 후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신탁증서를 반환하여 신탁저작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180일 이내에 해당 저작물 사용료 미지급분 및 결산서를 위탁자에게 지급 및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신탁 계약 약관의 변경 통지) ① 수탁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본 약관을 변경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수탁자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위탁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약관 변경에 이의가 있는 위탁자는 공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간 동안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제1항의 변경사항을 위탁자가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배상책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신탁저작권 관리에서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중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다.

제20조(약관의 개정) 이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세칙의 제정) 이 약관이 정한 것 외에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약관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탁법, 저작권법 및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3조(재판관할) 이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신탁계약에 관한 소송의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약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용계약약관

2005.11.09. 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이라 한다)와 제협이 신탁 받아 관리하는 영화저작물 저작권자의 권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 간에 준수해야 할 영화저작물의 이용방법 및 이용허락 조건 등에 대한 이용계약 내용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① 사용자는 제협과 문서로서 영화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제협은 제2항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작물 사용승인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② 제협은 사용자의 영화저작물 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있다.

1. 법령 및 제협의 각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
2. 사용자가 영화저작물의 사용에 있어 제협 이외의 관리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독점적 또는 이와 유사한 이용관계를 맺음으로써 타 이용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3. 제협에 저작물 사용료를 체납중인 자 또는 그가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 사용 승인을 요청한 경우.
4. 기타 상관례에 비추어 거래질서를 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조(이용허락) 이용허락의 조건은 제협과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하며 사용료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용료징수규정에 의한다.

제4조(사용의 범위) ① 사용자는 제협이 이용허락한 영화저작물을 제협의 허락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변환, 가공할 수 없으며 이용허락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방법, 사용지역 등에 변경이 생길 경우 제협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영화저작물의 사용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없다.

제5조(온라인 복제방지시스템의 사용) 사용자가 온라인 복제/전송 서비스 업체인 경우 제협이 승인한 복제방지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하며, 복제방지시스템 미적용으로 제협에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는 그 손해 또는 비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조(사용실태 보고 등) ① 사용자는 매월 해당 저작물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제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협은 필요에 의한 사용실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탈퇴 등으로 영상저작물이 제협의 관리저작물에서 제외된 경우 제협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연체 가산금) 사용자는 계약상 약정된 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가 연체된 경우 최초 1개월은 사용료의 5%, 그 다음달로부터 사용료 납부시까지 매월 사용료의 1.2%씩 증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 제협 또는 사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불이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제2조 제2항의 각호에서 규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때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는 제협으로부터 사용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제협의 신탁저작물 사용을 중지하여야 하며, 해지 후 신탁저작물 사용을 중지하지 않았을 경우 저작권법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침해시 조치) ① 사용자가 사용계약의 범위를 초과하여 협회가 관리하는 신탁저작권을 침해할 경우, 이용 허락 기간에 관계없이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사용계약의 범위를 초과하는 침해행위가 재발할 시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1년간 사용 승인을 보류한다.

제10조(약관의 개정) 이 약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세칙의 제정) 이 약관이 정한 것 외에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2조(재판관할) 이 약관에 의하여 체결된 이용허락계약에 관한 소송의 재판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약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사용료 징수규정

2018.07.25.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관리하는 영상저작물(이하 “관리저작물”이라 한다.)의 이용에 따른 공정한 사용료 산정 및 징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의 체결) 협회의 관리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서로써 저작물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약관) 본 규정에 따른 관리저작물 이용계약약관은 별도로 정한다.

제4조(이용구분) 협회 관리저작물의 이용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공연
2. 공중송신(방송, 전송, 그 밖의 공중송신)
3. 복제
4. 배포
5. 그 밖에 저작권법상 부여되는 권리에 따른 이용

제5조(사용료) ① 온라인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서비스에 대한 전송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0.55
2. 1,000원×0.55×관리저작물 이용횟수

비고1) 매출액이란 당해 사이트에서 발생한 제협 관리 저작물의 사용료에 회비, 광고 등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회비, 광고 또는 기타의 수입은 이 서비스 항목이 당해 사이트의 전체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전체 서비스 저작물 중 제협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② 기타 공연 시설에 대한 온라인 전송사용료는 다음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매출액×0.55
2. 2,000원×0.55×관리저작물 이용횟수

비고1) 매출액이란 온라인 전송업자가 공연자(시설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징수한 제협 관리 저작물의 사용료에 회비, 광고 등의 수입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회비, 광고 또는 기타의 수입은 이 서비스 항목이 당해 사이트의 전체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전체 서비스 저작물 중 제협 관리저작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③ 온라인 주문형 스트리밍 방식으로 총 재생시간이 한 편당 3분을 넘지 아니하며, 자신의 홈페이지 및 서버에서 영화파일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사전 신고할 경우 다음 대상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한다.

1. 온라인 주문형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는 자나 영화판매업자가 판매 촉진을 위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영화와 동일한 영화를 제공하는 경우
2. 위탁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
3. 저작재산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

제6조(전송사용료의 예외) 사용료가 없이 총 재생 시간이 한 편당 3분을 넘지 않으며, 사전 신고할 경우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전송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영화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영화 파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해 판매 하고자 하는 영화와 동일한 영화로 서비스를 하는 경우
2. 협회의 위탁자가 스스로 창작한 작품 또는 관리 저작물을 위탁자 자신의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는 경우
3. 저작권재산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영화 저작물에 관계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7조(기타 사용료)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의 경우 협회는 우선 이용허락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이용자와 사용료를 또는 금액을 협의하여 이를 반영한 징수규정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승인받은 규정에 의하여 정산한다.

제8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세칙의 제정) 이 규정이 정한 것 외에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07. 25)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사용료 분배 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이라 한다)가 신탁저작권을 관리하여 얻어진 사용료(온라인 영화저작물 불법복제 및 유통 단속으로 얻어진 손해배상금 포함)의 분배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분배대상자)

분배대상자는 제협의 신탁계약약관에 의한 위탁자 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로 한다.

제 3 조(분배자료)

사용료의 분배는 사용자가 제출한 사용보고서, 제협이 조사한 사용명세 등의 분배자료에 의하여 분배한다.

제 4 조(분배시기 및 분배대상 사용료)

① 제협이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의 분배시기 및 분배대상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분 배 대 상 사 용 료	분 배 시 기
1/4 분기(1월~3월 징수분)	6월 중
2/4 분기(4월~6월 징수분)	9월 중
3/4 분기(7월~9월 징수분)	12월 중
4/4 분기(10월~12월 징수분)	익년 3월 중

② 제협의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분배시기에 분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분배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 5 조(분배금)

① 제협이 위탁자에게 분배하는 분배금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에서 관리수수료를 공제하고 전기이월 분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개별 위탁자에게 분배할 분배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령을 희망하지 않는 한 차기 분배금에 가산한다.

제 6 조(이의신청)

- ① 위탁자가 저작물사용료 분배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신탁저작권이 사용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제협에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이의신청은 제협의 '사용료분배 이의신청서'에 기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협에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협은 이의신청 접수 후 9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7 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세칙의 제정)

이 규정이 정한 것 외에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관리수수료규정

2005.11.09.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이라 한다)가 신탁저작권을 관리함에 있어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이하 “관리수수료”라 한다)를 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관리수수료) 제협은 저작물 사용료 분배시 다음에 정한 요율에 따라 관리수수료를 징수한다.

1.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정한 사용료의 30% 이내
2. 영화저작물 불법복제 및 유통 단속활동으로 얻어진 손해배상금 중 민·형사상의 소송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30% 이내

제3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